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3 - 17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06 .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전문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코자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규격(IEC) 및 한국산업규격(KS C IEC)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변경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나. 본문 내용 전면 개정

- 용어의 정의 추가 (제2조) : 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 강제적용안전기준, 참고적용안전기준, 전자파적합성안전기준, 전기용품기술기준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심의 (제6조) : 산업표준화 전문위원회를 활용
- 전기절연물 및 부품등록 (제8조 내지 제8조의6) : 삭제

다. 강제적용, 참고적용, 전자파적합성안전기준 (제3조 내지 제5조) 개정

- [별표 1] 강제적용 안전기준

법·령·코너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0245-8등 9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0050-151 등 23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 [별표 3] 전자과적합성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기준(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1000-4-2 등 9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 ※ 개별 안전기준 내역 : 붙임 참조
 - * 안전기준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를 참고하시거나 제품안전과에서 열람

3. 의견제출

상기 개정코져 하는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3. 10. 30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7- 74124(FAX 02-507-6875)

법령코너

